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 법제: 장기요양서비스법(長期照顧服務法)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각 국은 그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문제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특히 사회보험의 일종인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1981년)을 통하여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더 충실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2007년 제정, 2015년 최종개정)을 새로 제정하여 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 종전보다는 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장기요양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가사, 간호, 목욕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고 있다.¹⁾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97%가 치매나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고 2개 이상을 앓는 수급자도 85%에 이른 점에서 이러한 시범서비스는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65세

* 본 논문의 주제인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에 대한 문의는 필자의 이메일(kimss0501@naver.com) 참조.

1) 지금까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어 수급자의 대다수가 단순 가사지원 위주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선택하였고, 방문 간호 혜택을 받는 사람은 2%대에 그쳤다. 7월부터 시행될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30분 내지 1시간씩 수시로 방문할 수 있고 간호사도 매주 한두 번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장기요양 노인 돌봄’ 이젠 집에서 한번에 받는다(2016-06-13) <<http://news.joins.com/article/20163351>> 참조.

이상의 노인의 장기요양급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1호) 여전히 그 적용범위에서는 제한이 있고 보험재원의 확충 등의 여러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이처럼 우리나라 법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하여,²⁾ 대만에서는 2015년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법」을 제정되어 그 적용범위를 단순한 노인장기요양에서 장기요양 일반으로 확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는 종래의 개별분야에서 규율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와 내용의 법으로 ‘노인요양’에서 ‘요양’으로, ‘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로의 근본적 태도를 전환하는 것으로 단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장

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이 분야에 대한 기본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우리법이 장기요양 ‘보험’ 중심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로 체계전환을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하에서는 새로 제정된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을 장기요양서비스법 일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의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

1. 장기요양서비스법 일반³⁾

2) 우리 법의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년 제정, 2015년 일부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자 중 방문요양(가사간병)과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 2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 구입과 대여가 인정되고 시설급여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인정되고 특별현물급여로서 가족요양비가 각각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통합적 케어서비스의 제안에 대하여는 윤희숙 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10.1, KDI, 2010 참조.

3) 이러한 점은 우선 본 법의 초안(長期照顧服務法草案總說明)과 장기요양보험법 초안의 입법취지(長期照顧保險法草案總說明) 참조. 또한 陸敏清, 「淺論我國長期照顧服務法草案」, 長期照顧雜誌 제17권 제3기, 2013.12, 284쪽 이하; 蔡淑鳳, 王秀紅, 「台灣長期照顧政策發展」, 護理雜誌, 제55권 제4기, 2008, 24-29쪽; 藍忠孚, 熊惠英, 「台灣地區長期照顧之現況及其問題」, 護理雜誌, 제40권 제3기, 1993, 15-24쪽; 陳俊成, 「照顧服務產業的發展」(2014/06/13) <<http://cpc.tw/zh-cn/consultancy/contents/21928>> 등 참조; 이외에 陳怡仁, 「長期照顧制度發展方向之分析」, 逢甲大學保險學研究所碩士論文, 2000년; 行政院衛生署, 內政部, 經濟建設委員會, 「長期照顧保險制度初步規劃成果與構想」, 行政院衛生署, 內政部, 經濟建設委員會, 2009; 沈芊妤, 「我國長期照顧契約法律責任之研究」, 嶺東科技大學 財務金融研究所 學位論文, 2014.1도 참조.

대만은 국민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이 계속적 감소로 1993년 공식적으로 국제연합의 세계위생기구(WHO)가 말하는 노령 인구가 전체인구의 7/100을 초과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이 되면 노령 인구가 14/100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다시 1925년에는 20/10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노화는 질병의 만성화, 건강문제의 장해화, 요양내용의 복잡화, 요양기간의 장기화 등 문제를 수반한다. 또한 대만의 가족 구성의 변경으로 능력상실자의 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장기요양이라는 것은 연령, 신분, 장애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심신능력을 상실한 자가 장기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로 하는 방식에 따라 지역사회 방식, 재택식과 기관입주식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요양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여 이미 전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민이 직면하는 중대한 해결과제로서 세계위생기구도 이미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전국적 보급방식의 장기요양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⁴⁾

대만은 1998년부터 ‘장기요양 선도계획’(建構長期照護先導計畫)⁵⁾, ‘신세대 건강안내 계획’(新世代健康領航計畫), ‘노인평온요양 서비스 강화방안’(加強老人安養服務方案), ‘요양서비스 복리와 산업발전방안’(照顧服務福利及產業發展方案)과 ‘장기요양10개년 계획’(長期照顧十年計畫) 등의 각종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처하고 있다. 가령 인구 노화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정부는 2007년부터 장기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택요양(居家照顧)를 포함하는 다원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계획은 고령자의 요양을 주된 출발점으로 한 것이었고 예산도 부족하여 서비스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55세 이상의 원주민과 50세 이상의 심신장해자로만 한정되었다. 이러한 연령에 의한 제한으로 40~60세에서 이러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서비스는 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⁶⁾

이러한 장기요양 서비스제도의 설립 등의 계획이나 실행방안을 체계화하고 완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 기구, 수준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할 필요가

4) 대만에서의 문제점은 許政賢, 「高齡化社會中法律規範的挑戰-以養護(長期照顧)契約在臺灣社會發展為例」, 月旦法學 제23기, 2014.7, 72쪽 이하.

5) 이에 대하여는 우선 吳淑瓊, 「建構長期照護體系先導計畫第二年計畫」, 內政部委託研究, 2002 참조.

6) 이러한 점은 우선 楊玉欣, 「淺談〈長期照顧服務法〉通過後的變革」, 漸凍人協會會訊 2015.8, 제164기 참조.

있는데, 종래의 대만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관리에 대하여 아주 다원적이고 규율도 통일되지 못하고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처리하였고, 대만에서 인구 노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의 각자의 발전(가령 사회복지체계, 위생환경체계, 퇴직요양체계 등)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기관도 여러 정부조직이나 기관이 관할하였고, 법도 또한 노인복지법(老人福利法), 심신장애자 권익보호법(身心障礙者權益保護法), 요양직원법(護理人員法), 정신위생법(精神衛生法) 등의 다양한 법이 존재하여 실제로 국민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완전하면서도 전면적인 제도(完整而全面的制度)와는 거리가 멀었다.⁷⁾ 이에 효율적인 통합을 위하

여 이를 폭넓게 편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포용할 관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수요의 증가와 동시에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그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제공자의 존엄과 권익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제도가 완비된 법령의 기초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법」(長期照顧服務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법은 원래 2009년에 재단법인 장기요양서비스업 협회(財團法人長期照顧專業協會)에 위탁하여 마련된 것으로 초안은 7장 55조이었다.⁸⁾ 이를 기초로 2010년 행정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여 2015년에 최종 법으로 통과되었고 공포 후 2년 후인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⁹⁾

- 7) 이러한 점에 대한 분석으로는 吳肖琪, 周世珍, 沈文君, 陳麗華, 鍾秉正, 蔡閻閻, 李孟芬, 周麗華, 謝東儒, 陳敏雄, 陳君山, 「我國長期照顧相關法規之探討」, 長期照顧雜誌 제11권 제1기, 2007.3, 35쪽 이하; 郝鳳鳴, 江嘉琪, 王韻茹, 高文琦, 國立中正大學法學院勞動法暨社會法研究中心, 「我國長期照顧服務法制化之研究」, 成果總報告書, 民國100年12月 <http://140.123.5.6/colsoc/chinese/aging/up loads/plans/1333619341_0.pdf> 등 참조.
- 8) 장기요양서비스법 초안(長期照顧服務法草案)은 원래 7장 55개 조이었다. 초안에 대하여는 우선 陸敏清, 「健全長期照顧服務體系：以我國長期照顧服務法草案為例」, 興國學報 2014년 제15기, 125-142쪽 참조; 蔡雅竹, 「論我國長期照顧雙法草案及其法律問題：兼論德國之長照保險制度」, 元照出版, 2016.3; 초안의 입법취지와 조문내용은 <<http://test.dweb.com.tw/hatw/upload/2012523165162.pdf>> 참조.
- 9) 2010년부터 2015년 동안 모두 17개의 초안이 제출되었고 4차의 전문보고, 4차의 조문토론, 5차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2010년 단체좌담회(團體溝通座談會), 2011년 4차의 장기요양서비스법 종합 설명회(綜合分區說明會), 2012년의 장기요양서비스법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있기도 하였다. 이는 2014년 1월 8일 입법원 사회복지 위생환경위원회(社福衛環委員會)에서 심의가 완료된 후 9차의 법안협약이 있는 후에 2015년 5월 15일 입법원의 3회독을 마친 후에 6월 3일 총통령으로 공포된 것이다. 초안은 행정원안(行政院版)과 같은 공식초안 외에도 林淑芬 위원안과 같은 개인초안(민간판)이 있었다. 이외에 婦女新知基金會에서 마련한 장기요양감독연맹본(長期照顧監督聯盟版本) 초안(長照服務法草案)도 참조. 가령 <www.awakening.org.tw/upload/uploadfile-619.doc> 참조.

본 법은 모두 7장 66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장), 장기요양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체계(제2장), 장기요양직원의 관리(제3장),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제4장),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자의 권익보장(제5장), 벌칙(제6장)과 부칙(제7장)이다.¹⁰⁾

이 법의 편별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한글)	目錄(중국어)	조문수
제1장 총칙	第一章 總則	제1조~제7조
제2장 장기요양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第二章 長照服務及長照體系	제8조~제17조
제3장 장기요양직원의 관리	第三章 長照人員之管理	제18조~제20조
제4장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第四章 長照機構之管理	제21조~제41조
제5장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자의 권익보장	第五章 接受長照服務者之權益保障	제42조~제46조
제6장 벌칙	第六章 罰則	제47조~제60조
제7장 부칙	第七章 附則	제61조~제66조

이 법이 통과된 후 현재에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후속 법령이 차례로 준비되고 있고 이러한 법령으로는 장기요양법인법(長照法人法)과 9개의 본 법 시행에 관련된 법령¹¹⁾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완전한 장기요양제도의 지속적 추진과 효과적인 기능의 발휘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위험부담, 상부상조정신을 고려

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가 있는 국민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부방식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하며 사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회보험을 기본계획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법 초안(長期照顧保險法草案)도 마련되어 행정원을 거쳐 입법원(국회)의 심의 중에 있다.¹²⁾

10) 기타 장기요양서비스법의 시행규칙(시행세칙)(본 법 제65조)과 관련규정이 차례로 마련(가령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2016년 5월 27일 현재).

11) 이러한 것으로는 동법의 시행규칙(施行細則), 장기요양기관 평가, 장기요양직원의 훈련인증과 보수교육 및 등록, 장기요양서비스 자원발전 장려지침(照服務資源發展獎助辦法), 장기요양기관 설립기준, 장기요양서비스기관 설립허가와 관리, 장기요양서비스기관 변경, 장기요양서비스 공유·비공유 부동산의 임차신청의 전문심사(長照服務機構專案申請租用公有非公用不動產審查), 외국인의 가정간호서비스 종사의 보충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12) 모두 10장 81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장)(제1조~제6조), 보험자(保險人), 보험대상자와 보험가입단위(제2장)(제7조~제15조), 보험제무(제3장)(제16조~제33조), 보험급부와 지급(支付)(제4장)(제34조~제47조), 보

2. 장기요양서비스법의 주요내용¹³⁾

이하에서는 새로 제정된 장기요양서비스법의 주요한 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살펴본다.

(1) 총칙(제1장)

총칙에서는 본 법의 입법목적, 주요용어의 개념과 주무관청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입법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체계를 완성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과 지원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보편적, 다원화되고 부담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받는 자와 요양제

공자의 존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제1항)¹⁴⁾.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서비스 대상의 성별, 성적 경향(性傾向), 성적 정체성, 혼인, 연령, 심신장애, 질병, 종족, 종교신앙, 국적과 거주장소에 의하여 차별하여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한다(제2항). 특히 장기요양서비스가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¹⁵⁾ 이어서 이 법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로서 장기요양, 심신능력상실자, 가족요양제공자, 장기요양 서비스직원, 장기요양서비스기관, 장기요양 관리센터,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와 개인요양 간호직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제3조).

협급부의 신청과 심사(核定)(제5장)(제48조~제52조), 보험업무기구(제6장)(제53조~제59조), 안전준비와 기금운용(제7장)(제60조~제61조), 관련자료와 서류의 수집, 검사(제8장)(제62조~제63조) 및 벌칙(제9장)(제64조~제73조), 부칙(제10장)(제74조~제81조)이다; 초안의 조문내용은 우선 <[http://www.mohw.gov.tw/MOHW_Upload/doc/長期照顧保險法草案\(1040604行政院院會通過版\)_0049650001.pdf](http://www.mohw.gov.tw/MOHW_Upload/doc/長期照顧保險法草案(1040604行政院院會通過版)_0049650001.pdf)>(2015년 6월 15일 행정원안) 참조; 이 법안에 관한 논의로는 가령 陳婉箏, 「長期照顧保險法保障你我未來」, 衛福 제4기, 2015.3, 18쪽 이하; 葉崇琦, 「‘勞基法修正案’及‘長期照顧保險法’對企業的影響及因應」, 會計研究月刊, 2015.9; 陳明芳, 「福祉國家的重構：以德國長期照護保險制度的建置與改革與兼論臺灣可得之借鏡」, 臺大社會工作學刊 제25기, 2012.6, 159쪽 이하 등 참조. 이 초안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長期照顧保險制度與法案問答集(Q&A)」, 2015.7 <http://www.nhi.gov.tw/Resource/Registration/4739_25.長期照顧保險制度與法案問答集.pdf> 참조.

13) 조문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陶百川, 王澤鑑, 劉宗榮, 葛克昌, 『最新綜合六法全書』(附2016年3月最新修訂資料), 三民書局, 2015.9; 黃昭元, 蔡茂寅, 陳忠五, 林鈺雄, 『綜合小六法』(35版), 新學林, 2016.3; 法務部全國法規資料庫 <http://law.moj.gov.tw/News/news_detail.aspx?id=114581>. 본 법의 우리 말 번역은 우선 김성수,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2015년)-조문내용과 해제」,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5, 435쪽 이하 참조. 이하의 서술을 이 조문번역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외에 향후 장기요양서비스보험법 초안도 아울러 번역할 예정이다.

14)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조문은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2015년)의 것을 말한다.

15) 이러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은 원래의 초안에는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이다; 이외에 2015년 장기요양서비스법은 헌법상의 생존권과 국가의 기본정책의 실질적 보장이라고 보기도 한다. 가령 鐘秉正, 「論長期照護制度之憲法保障」, 『社會福利法制與基本人權保障』, 神州出版社, 2004.9, 227쪽 이하.

우선 장기요양(長期照顧)은 심신의 능력 상실(失能)이 이미 지속적인 것이 되었거나, 6개월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개인이나 그 요양제공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생활지원, 협력, 사회참여, 요양과 관련 의료서비스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심신능력상실자(身心失能者)는 능력상실자(失能)로 약칭하기도 하는데, 신체 또는 심신기능이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어 그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호). 이어서 가족요양제공자(家庭照顧者)는 가족 중 능력상실자에 대하여 일상적인 규율을 하는 요양을 제공해주는 주요한 친족이나 가족을 말하고(제3호), 장기요양서비스직원(長照服務人員)은 장기요양직원(長照人員)이라고도 하는데 본 법이 정하는 훈련, 인증을 통하여 자격이 증명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 다음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하는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장기요양서비스기관(長照服務機構)은 장기요양기관(長照機構)으로 약칭하기도 하며 장기

요양서비스나 장기요양의 수요의 평가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하고(제5호), 장기요양관리센터(長期照顧管理中心)는 요양관리센터로 약칭되기도 하며 중앙주무관청이 지정하여 장기요양의 수요의 평가와 연결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기구)을 말한다(제6호).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체계(長照服務體系)라는 것은 장기요양 체계(長照體系)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기요양직원, 장기요양기관, 재무와 관련자원의 발전, 관리, 위탁기능 등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제7호). 마지막으로 개인요양간호직원(個人看護者)은 개인 자격으로 고용되어 능력상실자의 가정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8호).

이어서 장기요양서비스법에서 말하는 주무관청(主管機關)은 중앙의 경우에는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¹⁶⁾로 하고, 직할시의 경우에는 직할시 정부로 하고 현(縣)이나 시의 경우에는 현이나 시의 정부로 한다(제2조).¹⁷⁾ 또한 각각의 주무관청의 장기요양서

16) 대만의 위생복지부에 대하여는 <<http://www.mohw.gov.tw/CHT/Ministry/Index.aspx>> 참조. 원래의 초안은 위생서(衛生署)이던 것을 행정원의 조직변경으로 현행이 되었다.

17) 대만의 행정구역은 1개 성(臺灣省), 6개 직할시(臺北市, 新北市, 桃園市, 臺中市, 臺南市와 高雄市)로 되어 있고, 그 중 대만성에는 11개 현과 3개 시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1945년 8월 31일 제정된 臺灣省行政長官公署組織大綱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다시 9월 20일 臺灣省行政長官公署組織條例가 정식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만의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우선 <<https://zh.wikipedia.org/wiki/臺灣行政區劃>> 참조. 또한 내정부의 행정구역지도는 <<http://taiwanamap.moi.gov.tw/moi/run.htm>> 참조.

비스와 관련된 관할사항을 정하고 있다(제4조~제7조).

우선 중앙주무관청은 ①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전국적 장기요양정책과 법규의 제정과 장기요양체계의 계획, 수립과 홍보, ② 직할시, 현이나 시정부의 장기요양의 집행감독과 협조에 관한 사항, ③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의 권익보장계획, ④ 장기요양기관의 발전, 장려와 제39조 제3항의 지침에 의하여 중앙주무관청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평가, ⑤ 현이나 시를 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과 감독, ⑥ 장기요양직원의 관리, 양성과 훈련계획, ⑦ 장기요양재원의 계획, 모금과 장기요양경비의 분배와 보조, ⑧ 장기요양서비스의 정보체계, 서비스품질 등의 연구발전과 모니터링, ⑨ 장기요양서비스의 국제합작, 교류와 혁신 서비스의 기획과 추진, ⑩ 자원부족 지역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의 협력과 ⑪ 기타 전국적 장기요양서비스의 계획과 감독의 사항을 처리한다(제4조). 다음으로 지방주무관청은 ①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관할 내의 장기요양정책의 제정, 장기요양체계의 기획, 홍보와 집행, ② 중앙주무관청이 수립한 장기요양정책, 법규와 관련계획방안의 집행, ③ 지방의 장기요양서비스 훈련의 시행, ④ 관할 내의 장기요양기관의 감독지도평가와 제39조 제3항의 지침에 의

하여 정한 지방주무관청이 해야 하는 평가, ⑤ 지방장기요양 재원의 계획, 모금과 장기요양경비의 분배와 보조, ⑥ 관할 내의 발전이 곤란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려와 ⑦ 기타 지방의 성질에 속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사항을 처리한다(제5조).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법이 정하는 사항이 중앙 목적사업 주무관청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주무관청이 그 직무를 분장하여 담당한다(제6조). 가령 교육 주무기관은 장기요양교육, 인력훈련과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의 체육활동, 운동장과 시설설비 등에 관련된 사항이, 근로주무기관은 장기요양직원과 개인간호사의 근로조건, 취업서비스, 직업안전위생 등 사항, 의료나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이 없는 장기요양직원과 개인간호사의 훈련, 기능검정 등 관련사항을, 퇴역장병의 지원 주무기관은 퇴역군인의 장기요양 등 관련사항을, 건설, 공무, 소방 주무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건축관리,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장해없는 생활환경과 소방안전 등 관련사항을, 원주민 사무 주무기관은 원주민의 장기요양 관련사항의 협조, 연계와 협조계획과 추진을, 과학기술 연구사무 주무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보조 과학기술연구개발, 기술연구 이전, 응용 등 관련사항을, 기타 목적사업 주무기관은 각 해당 기관과 관련된

장기요양 등 관련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그 관청의 장(長)을 소집자로 하여 장기요양 관련학자, 전문가, 민간관련기관, 단체대표, 서비스사용자의 대표와 각 목적사업 주무관청의 대표를 초빙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국내 장기요양 인력자원의 개발, 비용, 직원의 보수, 심사(考核) 등의 장기요양 관련사무를 협력, 연구, 심의하고 자문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대표 중에서 관련학자, 전문가와 민간관련기관, 단체대표와 서비스사용자의 대표는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단일한 성별대표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원주민 대표나 원주민 문화를 잘 아는 전문학자가 적어도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제2항).

(2) 장기요양서비스와 장기요양체계 (제2장)

1)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앙주무관청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정한 범위를 공

고할 수 있다(제8조). 개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관리센터나 직할시, 현(市)의 주무관청은 이를 평가하여야 하고 직할시, 현(市) 주무관청은 평가결과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의료요양을 받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견서를 발행하고 요양관리센터나 직할시, 현(市)의 주무관청이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¹⁸⁾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능력상실자의 능력상실 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사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보조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조의 금액이나 비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성질의 서비스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서비스는 그 제공방법에 의하여 재택방식, 지역사회방식, 기관입주식, 가족요양자 지원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제9조).¹⁹⁾

18) 평가의 기준, 방법, 인원의 자격요건과 기타 관련사항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하는데, 2016년 6월 현재 아직 이러한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19) 이러한 것은 이미 노인복지법(제3장 서비스 조치)(제16조~제19조)에서도 입주식, 지역사회식과 기관식의 요양서비스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를 더 확충한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이외에 노인의 주된 필요를 의료요양과 건강관리, 생활요양과 가사관리와 휴식교양오락과 전업자문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우선 재택방식(居家式)은 주거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방식(社區式)은 지역사회의 일정한 장소와 설비를 설치하여 주간요양, 가족요양, 임시주거, 단체주택, 소규모의 다기능이나 기타 종합적 서비스 등을 기관입주식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방식의 종합적 서비스는 직할시, 현(시)의 주무관청이 지역사회대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 대표와 전문가 학자를 초빙하여 장기요양서비스와 그 관련 계획, 지역사회방식의 종합서비스구역의 분할,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사회 인력자원개발, 비용, 직원의 보수, 서비스 내용, 분쟁사건의 협력 등의 관련사항을 협력,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²⁰⁾ 이어서 기관입주식(機構住宿式)은 피요양자가 입주하는 방식으로 전일 요양이나 야간숙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족요양자 지원서비스(家庭照顧者支持服務)는 피용자를 가족이 요양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지정장소, 재택 등의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중앙주무관청이 서비스 방법을 공고하여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서비스 방법을 병합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방식이 제공할 수 있는 서

비스 내용도 정하고 있다(제10조~제13조).

우선 재택방식의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은 신체 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요양서비스, 가사서비스, 음식과 영양서비스, 보조용구 서비스, 필수적 주거시설 개선조정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긴급구조 서비스, 의료요양 서비스, 기타 능력상실이나 가중된 능력상실에 대한 예방서비스 또는 기타 중앙주무관청이 재택제공을 인정한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가 있다(제10조). 다음으로 지역방식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은 신체 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요양서비스, 임시주거서비스, 음식과 영양서비스, 보조용구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의료요양서비스, 교통영접 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기타 능력상실이나 가중된 능력상실에 대한 예방서비스나 기타 중앙주무관청이 지역사회에 기초하는 인정한 장기요양 관련서비스가 있다(제11조). 또한 기관입주방식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은 신체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요양서비스, 음식과 영양 서비스, 숙박서비스, 의료요양서비스, 보조도구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긴급의료후송서비스, 가족교육 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기타 능력상실이나 가중된 능력상실의 예방서비스 또는 기타 중앙주무관청이 입주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20) 이는 제7조의 규정과 병합하여 둘 수 있다.

을 인정한 장기요양 관련서비스가 있다(제 12조). 마지막으로 가족요양제공자 지원서비스의 제공내용은 관련정보의 제공과 위탁, 장기요양지식과 기능훈련, 가족요양제공자의 휴식이나 편의(喘息)를 위한 임시위탁서비스, 정서지원과 단체서비스의 위탁, 기타 가족요양자의 능력과 그 생활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제13조)가 있다. 이러한 가족요양자지원서비스의 신청, 평가, 제공과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체계

중앙주무관청은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자원과 수요를 조사하고 다원적 문화의 특색을 고려하고 도서벽지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계획을 수립(訂定)하고 필요한 권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4조)²¹⁾. 중앙주무관청은 장기요양 자원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망 구역(長照服務網區)을 분할하고 구역자원을 계획하고, 서비스네트

워크와 운송체계 및 인력개발계획을 설치할 수 있고, 자원이 과다한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나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원주민족 구역의 장기요양서비스계획, 장기요양서비스망 구역과 인력개발계획과 추진은 중앙주무관청이 원주민족위원회(原住民族委員會)와 협의(會商)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중앙주무관청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혁신서비스의 처리와 관련된 연구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어서 중앙주무관청은 장기요양 관련자원의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서비스와 인력자원의 충실과 균형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발전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5조). 이러한 기금의 한도는 적어도 신대만달러 120억 원²²⁾이 되어야 하고 5년 동안 지출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지출, 담배건강복지세, 기부수입, 기금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²³⁾

21) 이러한 중앙주무관청의 권장의 내용, 방식과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과 확대제한 및 장기요양 서비스망 구역의 분할, 인력개발 등의 관련사항의 지침(辦法)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2016년 6월 현재 아직 마련되지는 않고 있다.

22) 2016.6월 현재 우리 돈으로 4,318억 원 정도이다.

23) 기금의 한도와 출처는 본 법 시행 후 2년이 되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서의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현대복지국가의 사회보장과 장기요양에 대한 논의는 우선 廖欽福, 「社會保障財政法之概念與原則建構-以長期照顧服務之財源論為中心」, 財稅研究 第44권 제5기, 2015.11, 142-167쪽 참조.

또한 중앙주무관청은 서비스 사용자의 요양관리, 서비스 인력관리,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와 서비스의 질 등의 정보체계를 설치하여 장기정책 조정의 근거로 하여야 하고 이는 법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한다(제16조). 주관기관과 각 장기요양기관은 전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정책에 일치하게 공유(公有)인 비공용 부동산(非公用不動產)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 주무관청에 그 부동산 관리기관이 법에 의하여 임대할 것을 승인할 것을 특별안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17조).²⁴⁾ 그 차임기준은 해당 토지와 건물의 해당기간에 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토지세와 주택세에 근거하여 차임을 부과한다. 이러한 토지가 용지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은 주무관청에 관련기관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 승인을 신청한다.

(3) 장기요양직원의 관리(제3장)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에의 등록과 훈련과 주무관청의 공고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는 중앙주무관청이 공고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정항목을 장기요양직원이 제공하여야 한다(제18조). 이러한 장기요양직원의 훈련, 계속교육, 재직훈련과정의 내용은 다른 지역, 종족(族群), 성별, 특정질병과 요양 경험의 차이성을 형량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직원은 일정한 누적점수(積分)의 계속교육, 재직훈련을 받아야 한다.²⁵⁾

다음으로 장기요양직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제19조).²⁶⁾

다만 법이 정하는 훈련과 인증을 이미 완료하고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의료제공자와 사회복지사가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도 장기요양직원이 아닌 자를 수용(容留)하여 이 법이 정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제19조 제2항) 등록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24) 이러한 특별안건의 보고신청의 절차, 요건과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17조 제3항).

25) 또한 장기요양직원의 훈련, 인증, 계속교육과정 내용과 누적점수의 인정, 증명유효기간과 그 갱신 등 관련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18조 제4항).

26) 이러한 등록, 그 요건, 절차, 장소, 서비스 내용, 자격의 취소와 폐지, 임시지원과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변동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소재지의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3항).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직원은 업무로 인하여 타인의 비밀을 알았거나 지득(知得)한 비밀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누설할 수 없다(제20조).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제4장)

장기요양기관은 그 직무내용, 특히 제공 서비스에 의하여 재택식 서비스 종류, 지역 사회식 서비스 종류, 기관입주식 서비스 종류, 종합식 서비스 종류와 기타 중앙주무관청의 공고를 거친 서비스 종류로 나눌 수 있다(제21조).

기관입주식 서비스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기관입주식 서비스를 하는 종합식 또는 기타 중앙주무관청의 공고를 거친 서비스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²⁷⁾으로 이를 설립하여야 한다(제22조).²⁸⁾ 다만 공립장기요양기관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어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확대, 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제23조).²⁹⁾ 원주민 지구(原住民族地區)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과 인원배치는 중앙주무관청은 원주민족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휴업, 재개업이나 허가증명의 기재사항의 변경은 사실이 발생한 날 전 30일 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5조).³⁰⁾ 특히 영업정지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때에는 1회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을 넘으면 휴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휴업은 영업정지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기간을 넘어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바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廢止)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구가 설립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앞에 해당 정부기관(기구)의 명칭을 붙여야 하고 민간이 설립한 경우에는 사립(私立)의 2

27) 이를 합하여 장기요양기관법인(長照機構法人)이라고 약칭한다.

28)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법인의 설립, 조직, 관리와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본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별도로 법률로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22조 제3항).

29)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요건, 설립기준, 책임자의 자격과 그 설립, 확충, 이전의 신청절차, 심사기준과 설립허가증명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등 관련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24조 제1항).

30) 이러한 신청절차와 심사 등 관련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자를 붙여야 한다(제26조). 장기요양기관은 그 장소에 명백한 자체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기관의 유형과 그 서비스내용을 부가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면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27조). 이외에 장기요양기관은 동일한 직할시나 현(시)에서 허가증명이 폐지되었거나,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과 동일한 명칭이나 그와 정부기관, 기타 공익단체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28조).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광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면 장기요양서비스의 광고를 할 수 없다(제29조). 광고를 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의 광고는 ① 장기요양기관의 명칭과 제26조 제2항이 정하는 부가하여야 할 사항, 설립일자, 허가증번호, 주소, 전화와 교통노선 ② 장기요양기관 책임자의 성명, 학력과 경력 ③ 장기요양직원의 전문직업과 기술담당자 증서(技術人員證書) 또는 본 법이 정하는 증명서번호 ④ 서비스 제공방법과 서비스 시간 ⑤ 업무정지, 유업, 재개업, 이전과 그 연월일 ⑥ 주무관청이 승인한 비용징수기준과 ⑦ 기타 중앙

주무관청이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고하여 지정한 사항의 내용에만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는 업무책임자 1인을 두어 그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³¹⁾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책임자가 유고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으면, 업무책임자의 자격에 맞는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이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제31조). 대리기간은 30일을 넘으면 소재지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 대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외에 중앙주무관청은 또한 장기요양체계, 의료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수립하여 서비스 사용자에게 유효한 위탁과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2조). 또한 기관입주식 서비스종류의 장기요양기관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3조). 기관입주방식 서비스종류의 장기요양기관은 공공사고 책임보험³²⁾에 가입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의 생명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4조). 또한 중앙

31) 이러한 업무책임자의 자격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30조 제2항).

32)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범위와 금액은 중앙주무기관이 목적사업단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제34조 제2항).

주무관청은 지방주무관청이 참고를 위하여 지역의 소득, 물가지수, 서비스의 질 등을 참고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징수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35조).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징수의 항목과 그 액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재지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할 때에도 같다.

나아가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징수는 비용수취항목과 금액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비용징수규정을 위반하여 액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항목의 비용징수를 할 수 없다(제36조).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그 설립허가증명, 비용징수, 서비스 항목과 주무관청이 설치한 의제기방법 등의 정보를 기관 내의 눈에 뜨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제37조).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은 그 소속이 등록된 장기요양직원을 감독하고 그 제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관련사항을 기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제38조). 이러한 의료요양에 관한 부분의 기록은 의료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외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적어도 7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원, 감독, 심사(考核), 검사와 평가(評鑑)를 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39조).³³⁾ 필요한 때에는 또한 그 관련서비스자료의 제공을 통지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고 회피, 방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아울러 주무관청은 서비스 사용자 중심과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정보공개, 투명, 가족요양자의 대표참여, 다원적 문화의 고려와 요양과 생활의 질의 확보라는 원칙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0조).

나아가 장기요양기관의 휴업이나 영업정지를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에게 대하여 적당한 위탁이나 배치(安置)를 하여야 하고, 위탁이나 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이 위탁배정에 협력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협력(配合)하여야 한다(제41조).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위탁이나 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주무관청은 이를 강제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주무관청에 협력하여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자의 권익 보장(제5장)

33)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과 기타 관련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39조 제3항).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 가족이나 비용지급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42조).³⁴⁾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에 대하여 녹화, 녹음이나 촬영할 수 없고 그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거소)와 기타 신분을 변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거나 기록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주된 요양을 하는 최근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3조 제1항).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사용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주된 요양을 하는 최근친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43조 제2항).

이외에 장기요양기관과 그 직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사용자에게 대하여 적당한 요양과 보호를 하여야 하고 유기, 심신학대, 차별(歧視), 상해, 그 인신의 자유를 위법하게 제한하거나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사정을 야기할 수 없다(제44조). 또한 주무관청은 소원(陳情), 이의제기(申訴)와 중재절차를 두

어야 일반인의 이의제기 사건과 장기요양서비스 단위가 위탁한 분쟁을 처리하여야 한다(제45조). 지방주무관청은 접수기관의 기관입주식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부양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스스로 또는 민간단체와 함께 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감독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거절할 수 없다(제46조).

(6) 벌칙(제6장)

장기요양서비스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러 벌칙을 두고 있고(제47조 내지 제59조) 이 법이 정하는 벌칙은 지방주무관청이 이를 처벌한다(제60조). 이러한 벌칙은 주로 과태료를 처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는 것도 있고 개선이 없으면 영업정지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와 별개로 또는 병과하여 명할 수도 있다. 기타 위반자의 이름의 공개나 과다 수령한 비용의 반환(제49조)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³⁵⁾

34) 이러한 계약서의 양식, 내용은 중앙주무관청이 표준계약(定型化契約)의 범례와 그 기재해야 할 사항,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제정하여야 한다(제42조 제2항).

35) 위반사안에 따라서 해당 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주무관청이 분쟁처리회의를 소집하여 조사하고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분쟁처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59조 제2항).

(7) 부칙(제7장)

본 법은 공포 후 2년부터 시행한다(제66조). 본 법은 2015년 6월 3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65조).

이외에 경과규정으로 본 법 시행 전에 이미 기타 법률규정에 의하여 본 법이 정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한 직원은 본 법 시행 후 2년 내에 계속 장기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고, 제18조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61조).³⁶⁾ 또한 본 법 시행 전에 이미 기타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본 법이 정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한 기관(기구), 법인, 단체, 합작사, 사무소 등(이하 장기요양관련기관이라고 함)은 본 법 시행 후 5년 내에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제작과 장기

요양기관의 설립허가의 문서의 교환발행을 완료해야 한다(제62조).³⁷⁾ 기간이 지나도 허가의 취득이나 교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립기관으로 재택방식 서비스종류를 취하는 장기요양 관련기관은 제22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원래의 사립기관으로 재택방식의 서비스 종류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으로 전항의 개정제작과 설립허가서류의 교환발생을 완료한다.³⁸⁾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중 퇴역장병 지원조례(國軍退除役官兵輔導條例)³⁹⁾에 의하여 설립된 명예군인의 집(榮譽國民之家)은 퇴역장병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부설되고 그 가족구성원의 배치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⁴⁰⁾ 관련 설립기준, 업무책임자의 자격과 장기요양직원의 훈련인증기준, 평가 등은 모두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급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36) 이러한 직원의 훈련과정, 이 과정과 본 법 시행 전의 것의 통합, 원래 가진 증명의 교환과 인정기준 등 관련사항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61조 제2항).

37) 이러한 변경제작의 신청, 작업과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62조 제4항).

38) 다만 그 책임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확대, 감축, 이전, 명칭 등의 변경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외에 장기요양 관련기관의 관리는 제62조 제1항 기간 내에 설립허가가 없거나 변경제작 전에 완료되지 아니하면 기타 법률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39조 내지 제45조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벌칙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한다(제62조 제3항).

39) 이는 퇴역하여 제대한 군인(國軍退除役官兵)의 지원과 정착과 그 권익의 향유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1964년 제정되어 2015년 최종 개정되었다. 모두 8장 34조로 되어 있다.

40) 가령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5조의 관련 허가, 승인 절차의 규정이 그러하다.

30일 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의 결재(備査)를 신청하여야 한다(제63조).⁴¹⁾ 또한 개인간호사는 중앙주무관청이 공고하여 지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제64조). 본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능력상실자의 가정에 고용되어 간호업무를 종사하는 경우에는 피용자는 그 중앙주무관청이 정하는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다.⁴²⁾

Ⅲ. 우리 법의 시사점

이상에서 대만에서 새로 제정된 장기요양서비스법에 관한 내용을 조문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은 종래의 단순한 노인의 요양의 측면에서 이를 일반화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생활능력이 부족한 모든 자에게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

다. 특히 노인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심신능력의 상실이 지속적이거나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의 필요에 제공될 수 있는 생활지원, 협력, 사회참여와 요양에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우리 법(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은 노인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여 종래의 대만의 상황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은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장기요양의 기본법으로 작용될 수 있다. 현재 대만은 장기요양보험법도 초안이 마련되어 국회(입법원)에서 법안이 심의 중이다. 장기요양과 관련하여서는 그 요양서비스 일반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그 서비스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요양서비스의 재원과 관련하여 요양보험이 논의되는 것이 논리적이다.⁴³⁾ 우리 법은 장기요양서비스법은 아직 없고 종래의 대만과 같이 단편적인 단행법에서 다루

41)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3조 제2항).

42) 이러한 보충훈련의 과정내용, 비용수수항목, 신청절차와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지침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제64조 제3항).

43) 우리나라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1997년 개호보험법(介護保險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현황에 대하여는 우선 <<https://ja.wikipedia.org/wiki/介護保險法>> 참조; 독일에서도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20여 년 동안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에 1994년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독일사회법전 제11권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효과적 수발보험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발보험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와 수발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개정(2001년), 무자녀 피보험자의 추가부담(2005년), 수발가족 실업보험보장(2006년) 등과 같은 부분적 개정을 거쳐 2008년 5월 수발보험의 체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정되어 있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법체계에서 부족함이 있다. 국내에서도 향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통합적 운용이 제안되기도 하는데⁴⁴⁾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행정이나 정책차원에서의 통합적 요양서비스의 운용보다는 법률의 측면에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기본개념의 정의, 주무관청의 통합 운영, 장기요양서비스의 대표의 구성,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담당기관과 담당직원의 자격인정과 관리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자의 권리보장 등은 향후 우리의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담겨져야 할 기본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평가와 반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망의 구축, 정보체계의 구축 등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전국화와 통합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이어서 후속조치로 마련 중인 장기요양서비스법의 시행을 위한 여러 규정과 관련 법령(지침)도 향후 우리법의 장기요양서비스법의 도입과 구체적 적용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기요양서비스법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 중인 대만의 장기요양보험법의 논의도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의 운용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타당성의 판단에도 귀중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김 성 수

(경찰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제의 개선에 관한 법(Gesetz zur strukturellen Weiterentwicklung der Pflegeversicherung)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에 관한 것으로는 우선 <<https://de.wikipedia.org/wiki/Pflegestärkungsgesetz>> 참조. 독일에 관한 문헌으로는 Richter, Das Pflegestärkungsgesetz I,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2015, 1271; Schölkopf, ua., Das Erste Pflegestärkungsgesetz (PSG I) – Inhalte und Bedeutung für die pflegerische Versorgung, Neue Zeitschrift für Sozialrecht (NZS) 2015, 521 등 참조; 한·독·일의 3국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것으로는 나용선, 「독일, 일본,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 연구 제8권 제1호, 2011, 253쪽 이하도 참조.

44) 이러한 점은 통합서비스의 논의로 윤희숙 편, 앞의 보고서 참조.

참고문헌

- 김성수, 「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2015년)-조문내용과 해제」,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5.
- 나용선, 「독일, 일본,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8권 제1호, 2011.
- 윤희숙 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2010.1, KDI, 2010.
- ‘장기요양 노인 돌봄’ 이젠 집에서 한번에 받는다(2016-06-13) <<http://news.joins.com/article/20163351>>.
- 蔡雅竹, 『論我國長期照護雙法草案及其法律問題：兼論德國之長照保險制度』, 元照出版, 2016.3.
- 鐘秉正, 『社會福利法制與基本人權保障』, 神州出版社, 2004.9.
- 陶百川, 王澤鑑, 劉宗榮, 葛克昌, 『最新綜合六法全書』(附2016年3月最新修訂資料), 三民書局, 2015.9.
- 黃昭元, 蔡茂寅, 陳忠五, 林鈺雄, 『綜合小六法』(35版), 新學林, 2016.3.
- 陳怡仁, 「長期照護制度發展方向之分析」, 逢甲大學保險學研究所碩士論文, 2000.
- 沈芊好, 「我國長期照護契約法律責任之研究」, 嶺東科技大學 財務金融研究所 學位論文, 2014.1.
- 行政院衛生署, 內政部, 經濟建設委員會, 「長期照護保險制度初步規劃成果與構想」, 行政院衛生署, 內政部, 經濟建設委員會, 2009.
- 吳淑瓊, 「建構長期照護體系先導計畫第二年計畫」, 內政部委託研究, 2002.
- 廖欽福, 「社會保障財政法之概念與原則建構-以長期照顧服務之財源論為中心」, 財稅研究 第44권 제5기, 2015.11.
- 陸敏清, 「淺論我國長期照護服務法草案」, 長期照護雜誌 第17권 제3기, 2013.12.
- 蔡淑鳳, 王秀紅, 「台灣長期照護政策發展」, 護理雜誌, 第55卷 第4期, 2008.
- 藍忠孚, 熊惠英, 「台灣地區長期照護之現況及其問題」, 護理雜誌, 第40卷 第3期, 1993.
- 許政賢, 「高齡化社會中法律規範的挑戰-以養護(長期照護)契約在臺灣社會發展為例」, 月旦法學 第23기, 2014.7.
- 楊玉欣, 「淺談《長期照顧服務法》通過後的變革」, 漸凍人協會會訊 2015.8, 제164기.
- 吳肖琪, 周世珍, 沈文君, 陳麗華, 鍾秉正, 蔡開閻, 李孟芬, 周麗華, 謝東儒, 陳敏雄, 陳君山, 「我國長期照護相關法規之探討」, 長期照護雜誌 第11권 제1기, 2007.3.
- 陸敏清, 「健全長期照護服務體系：以我國長期照顧服務法草案為例」, 興國學報 2014년 제15기.
- 陳婉箏, 「長期照顧保險法保障你我未來」, 衛福 第4기, 2015.3.
- 葉崇琦, 「勞基法修正案」及「長期照顧保險法」對企業的影響及因應」, 會計研究月刊, 2015.9.
- 陳明芳, 「福祉國家的重構：以德國長期照顧保險制度的建置與改革與兼論臺灣可得之借鏡」, 臺大社會工作學刊 第25기, 2012.6.
- Richter, Das Pflegestärkungsgesetz I,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2015, 1271.
- Schölkopf, ua., Das Erste Pflegestärkungsgesetz (PSG I) – Inhalte und Bedeutung für die pflegerische Versorgung, Neue Zeitschrift für Sozialrecht (NZS) 2015, 521.
- 郝鳳鳴, 江嘉琪, 王韻茹, 高文琦, 國立中正大學法學院勞動法暨社會法研究中心, 「我國長期照護服務法制化之研究」, 成果總報告書, 民國100年12月 <[http://140.123.5.6/colsoc/chinese/aging/up loads/plans/1333619341_0.pdf](http://140.123.5.6/colsoc/chinese/aging/up%20loads/plans/1333619341_0.pdf)>.
- 陳俊成, 「照顧服務產業的發展」(2014/06/13) <<http://cpc.tw/zh-cn/consultancy/contents/21928>>.
-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長期照顧保險制度與法案問答集(Q&A)」, 2015.7 <http://www.nhi.gov.tw/Resource/Registration/4739_25.長期照顧保險制度與法案問答集.pdf>.
- 法務部全國法規資料庫 <http://law.moj.gov.tw/News/news_detail.aspx?id=114581>.
- <[http://www.mohw.gov.tw/MOHW_Upload/doc/長期照顧保險法草案\(1040604行政院院會通過版\)_0049650001.pdf](http://www.mohw.gov.tw/MOHW_Upload/doc/長期照顧保險法草案(1040604行政院院會通過版)_0049650001.pdf)>.
- <<http://test.dweb.com.tw/hatw/upload/2012523165162.pdf>>.
- <www.awakening.org.tw/upload/uploadfile-619.doc>.
- <<http://www.mohw.gov.tw/CHT/Ministry/Index.aspx>>.
- <<https://zh.wikipedia.org/wiki/臺灣行政區劃>>.
- <<http://taiwanarmap.moi.gov.tw/moi/run.htm>>.
- <<https://ja.wikipedia.org/wiki/介護保険法>>.
- <<https://de.wikipedia.org/wiki/Pflegestärkungsgesetz>>.